

이 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원본은 은행이 보장하여 드립니다.

개인연금신탁 약관 (구 하나은행)

제 1 조 (약관의 적용) 개인연금신탁(이하 "신탁"이라 함)거래에는 이 약관과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신탁관계인) ① 이 신탁의 위탁자는 하나은행에 금전을 신탁한 자이며, 수탁자란 금전을 인수한 자, 즉 하나은행을 말합니다.

② 이 신탁의 위탁자는 만 20 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수익자는 위탁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 3 조 (신탁방법) 이 신탁은 10 년이상 일정기간 동안 신탁금을 적립한 후 신탁원리금을 5 년이상 일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제 4 조 (신탁기간) ① 이 신탁의 신탁기간은 적립기간과 연금지급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합니다.

② 적립기간은 10 년 이상 월단위로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 세 이상이 되는 때까지로 정하되 관계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연금지급기간은 제 2 항의 적립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5 년 이상 연단위로 정합니다.

④ 제 2항의 적립기간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1개월 이상 월단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제 3항의 연금지급기간은 1년이상 연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제 4 항에 불구하고 연금지급 기간 중 연장신청일 현재 수탁잔액이 120 만원 미만인 경우와 연금지급기간 만료 1 년 이내에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증서에 의한 거래) 거래처는 은행에서 교부한 증서(통장, 전자통장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증서 없이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1. 무통장입금 신청서에 의한 경우
2. 자동이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의 약정에 의한 경우
3. 제 14 조 제 6 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경우

2018.10.01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약관-60호

제 6 조 (적립금의 적립) ① 이 신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매분기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매회 적립금은 1 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② 적립기간 만료시까지 적립누계액은 120 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관계법령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 위탁자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원금보전) 이 신탁계약의 이익원가, 해지, 이전 또는 종료시에 매이익 계산기간 중의 신탁이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신탁이익을 영으로 하여 신탁원본을 보전합니다. 다만, 제 13 조에 의해 계약이전시 받는 이전수수료는 원금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8 조 (이익계산) 이 신탁의 이익계산은 매년 2 회, 6 월과 12 월의 25 일에 실시하여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에 가산합니다.

제 9 조 (연금지급) ① 연금지급은 월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3 개월이나 6 개월 또는 1 년 단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금지급액은 균등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체증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 제 2 항의 연금지급방법은 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연금지급액은 실적배당률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연금지급은 적립기간 만료일 익일을 연금지급 기준일로 하여 제 1 항의 연금지급 주기가 경과한 응당일에 지급합니다.

제 10 조 (연금지급액의 산출)

① 제 8 조 제 1 항의 연금지급액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1. 정액지급식

가. 월지급연금액

$$R / 2 \times (1 + R/2)^{2n}$$

$$(6 + 5R/4) \times ((1 + R/2)^{2n} - 1)$$

나. 3 개월지급연금액

2018.10.01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약관-60호

$$\frac{R / 2 \times (1 + R/2)^{2n}}{(2 + R/4) \times ((1 + R/2)^{2n} - 1)}$$

다. 6 개월지급연금액

$$\frac{R / 2 \times (1 + R/2)^{2n}}{(1 + R/2)^{2n} - 1}$$

라. 연단위지급연금액

$$\frac{((1 + R/2)^2 - 1) \times (1 + R/2)^{2n}}{(1 + R/2)^{2n} - 1}$$

2. 체증지급식

가. 월지급연금액

$$\frac{(1 + R/2)^{2n} \times ((1 + R/2)^2 - (1 + d))}{(6 + 5R/4) \times (2 + R/2) \times ((1 + R/2)^{2n} - (1 + d)^n)}$$

나. 3 개월지급연금액

$$\frac{(1 + R/2)^{2n} \times ((1 + R/2)^2 - (1 + d))}{(2 + R/4) \times (2 + R/2) \times ((1 + R/2)^{2n} - (1 + d)^n)}$$

다. 6 개월지급연금액

$$\frac{(1 + R/2)^{2n} \times ((1 + R/2)^2 - (1 + d))}{(2 + R/2) \times (2 + R/2) \times ((1 + R/2)^{2n} - (1 + d)^n)}$$

라. 연단위지급연금액

2018.10.01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약관-60호

$$(1 + R/2)^{2n} \times ((1 + R/2)^2 - (1 + d))$$

$$(1 + R/2)^{2n} - (1 + d)^n$$

※ R : 예정배당률, 이익계산 : 연 2 회, N : 연수, D : 체증률

② 제 1 항의 예정배당률은 1 년제 정기예금 고시금리로 정하며, 실적배당률 및 경제사정 등에 따라 연금지급 기준일로부터 1 년마다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최종연도에 연금지급기간 중에는 예정배당률을 수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적립기간 만료시의 연금기금액은 적립기간 만료시까지의 미지급신탁이익을 원가하여 산출하며, 연금지급기간 중에 예정배당률과 실적배당률의 차이가 발행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매년 예정배당률 변경일에 반영하여 연금기금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최종연도의 예정배당률과 실적배당률의 차액은 최종 연금지급일에 정산합니다

제 11 조 (특별중도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다만, 제 2 호 내지 제 7 호의 사유가 2006. 2. 9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6 월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위탁자의 퇴직
4. 위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5.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6. 위탁자의 3 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수탁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8.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제 12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은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익자 본인명의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은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세제혜택) ① 이 신탁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탁기간 중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신탁으로 인해 이미 받은 세제상의 혜택을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추징하게 됩니다.

2018.10.01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약관-60호

③ 연금지급기간 중 해당 연금 지급일을 경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연금지급액에 대해 지연수령한 기간 동안 발생한 신탁이익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14 조 (계약 이전) ① 이 신탁은 위탁자의 신청에 의해 다른 취급금융기관으로 신탁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권담보대출이 있는 계좌는 별도의 자금으로 수익권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계약이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 의한 위탁자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1. 일부금액을 이전신청하는 경우
2. 다른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납입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이전신청 거절통보가 있는 경우
3. 기타 법적인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은행은 이전할 신탁금을 다른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접수통보가 있는 날(은행 영업시간 경과 후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전받을 금융기관에 직접 이체합니다.

④ 이 신탁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중 채권시가평가제를 적용받는 상품으로 이전됩니다.

⑤ 계약 이전 후 청약거절 등 사유로 계약이전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이전받는 것으로 처리하되, 제 4 항을 적용합니다.

⑥ 제 1 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이전 받을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과 동시에 개인연금저축 계약이전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1. 계약이전 신청 취소는 거래처가 개인연금저축 계약이전신청서에서 선택한 개인연금저축 계약이전 의사확인 방법에 따라 전화통화 또는 이전하는 은행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2. 계약이전하는 은행의 전화녹취 또는 방문은 계약이전 신청일로부터 익영업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통화실패 등으로 녹취불가시 또는 미방문시 계약이전 신청이 취소됩니다.
3. 개인연금저축 계약이전 신청서를 예약이전 받을 금융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도 제 1 항 단서 및 제 2 항 내지 제 5 항에 따릅니다.

⑦ 제 6 항에 따라 계약이전 하는 경우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제 16 조(신탁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계약이전 받을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개인연금저축 계약이전신청서를 지급청구서(인감 또는 서명포함)로 보며 계약이전의사를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경우 Pin_Pad 기를 통한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거래중지계좌) ① 수탁자는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신탁 내에서 거래중지계좌로 편입 후 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수탁잔액이 1 만원 미만이고 최종거래일 또는 신탁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2. 수탁잔액이 1 만원 이상 5 만원 미만이고 최종거래일 또는 신탁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3. 수탁잔액이 5 만원 이상 10 만원 미만이고 최종거래일 또는 신탁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②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 계좌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익계산을 하지 않으며 위탁자로부터 지급 등을 요청받을 경우에는 해당계좌에 대한 신탁이익을 일괄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제 16 조 (배당률 산출방법 및 신탁보수) ① 이 신탁의 배당률은 운용자산별 운용수익률에 각각의 운용자산을 곱하여 합산한 총 운용수익에서 증권매매손익 등을 가감하고, 이를 총 운용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 복합수익률에서 신탁보수율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② 제 1 항의 신탁보수율은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6%로 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산출된 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수탁자의 회계결산일
2. 신탁해지일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03년 5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신탁보수).

이 약관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신탁보수, 계약이전수수료)

이 약관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연금계좌 이체 간소화)

이 약관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적립기간 월단위 변경)

2018.10.01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약관-60호